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91
------	-----

2023. 9.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0일, 김원중 의원(찬성자 3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1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9.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원중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과 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2019년도 제정 이후 급변한 감염병 등 안전 관련은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관리 방안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7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에 대한 “감염병 등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을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마이스(MICE) 산업 현황

- 서울시는 급변하는 마이스 환경에 대비하여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023~2027)」을 마련하였으며 잠실, 서울역, 마곡 등 마이스 시설 건립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산업 지원 방안 연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세계 국제회의 도시 2위(UIA, 국제협회연합), 월드 베스트 마이스 도시(글로벌 트래블러) 등 서울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업계 경영환경이 변화하며 마이스 업계에 인력난 및 경영난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마이스 산업도 안전, 지속가능, 혁신과 변혁, 디지털·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 마이스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대면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하이브리드, 인공지능(AI), 챗봇 등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진화시켰으며, 기존 마이스 산업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진입으로 위협받게 되었음.
- 또한 친환경, 사회적 기여, 책임경영(ESG)등 지속가능성 등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행사 개최에 필수 요소로 등장하고 행사가 지닌 콘텐츠와 참가자 경험, 안전지침 구축이 중요해짐.
- 2022년 서울 마이스(MICE)산업 육성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하이브리드) 행사 개최로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정보 및 경험부족, 기술 미비, 예산 부족 등으로 한계에 봉착함.

위드 코로나 MICE 산업환경 전망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 정도	
온라인 마케팅 비중 증가	81.8%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준비	56.8%
비대면 행사 기술 인력 수요 증가	80.5%	비대면 행사 기술 인력 확보 준비	41.1%
하이브리드 비중 증가	77.5%	비대면 행사에 대한 사업구조 변화 준비	55.5%
미팅 테크놀로지 수요 증가	72.5%	미팅 테크놀로지 수요 증가 준비	49.6%

(출처: 2022년 서울 마이스(MICE)산업 육성 계획 일부 발췌)

-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서울 안심 마이스 모델 운영” 을 제시하고 행사 주최자나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행사장 안전관리와 방역 생활화를 추진해 왔음.

- 관련 예산으로는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전년대비 7억 8천8백만원이 증가한 총 77억 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 등 관련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기관	사업명	사업예산	계
서울시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4,030	4,599
	서울 관광 MICE 기업지원센터 운영	215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250 (대외협력기금)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운영	104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재단	컨벤션 유치 마케팅	850	3,129
	기업회의·인센티브 유치마케팅	565	
	서울형 글로벌 국제회의 기획가 육성	315	
	MICE 콘텐츠 개발 및 확산	500	
	SMA 글로벌 경쟁력 강화	550	
	MICE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200	
	버추얼 MICE 인프라 활성화	149	

다.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방안 마련(안 제5조)

- 개정안은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시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 을 신설하고 있음.
- 관련법령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도 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개정(2020.12.22.)되어 서울시 관련 기본계획에도 반영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중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9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0일
발 의 자: 김원중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신복자,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홍국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과 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19년도 제정 이후 급변한 감염병 등 안전 관련은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7.·8.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14조(국제협력) ① (생략)</p> <p>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생략)</p>	<p>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방안</u></p> <p>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국제협력)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p>